

제41회 정기포럼

-행정자치부민간협력지원사업-

자원봉사진흥법 제정과 향후과제

- 일시 : 2004년 7월 16일 (금) 오후 2시~8시
- 장소 :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소회의장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임원구성

·회장 : 이제훈 (삼성사회협력위원회 상임고문)

·총무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고문 :

최일섭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대한적십자 총재,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한국자원봉사포럼 4대 회장)

·운영위원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 (<주>미러텍 사장)

박현경 (강원도청보건복지 여성국장)

설계현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강현 (불런티어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최성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사무국

우)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 kovofa@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오시영

차 례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헌장	2
전체발제	3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협의회발제	16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센터 발제	32
안승화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학생 발제	41
김정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학생 발제	46
신동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 사무국장)	
주부노인발제	52
김미라 (무연봉사단 단장)	
부 록	60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포럼 일정

14:00~14:30	등록 및 접수
14:30~15:0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개회사 : 이제훈(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15:00~15:30	전체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제 : 자원봉사진흥법 제정과 향후과제· 좌 장 : 최일섭(호서대학교 사회복지교수)· 이창호(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15:30~16:30	소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 인프라구축· 소주제 : ①정부②협의회③센터· 제2주제 : 국민 참여· 소주제 : ①기업②학생③주부·노인
16:30~18:00	소주제 토론
18:00~20:00	토론발표
20:00	폐회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전체 발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통과이후의 향후과제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자원봉사진흥법안 통과 이후의 향후과제

이 창 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총간사장

1. 서론

이 글은 최근 한창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쟁점, 성격, 특징 등을 설명하면서 동 법안 통과이후의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이하 자원봉사법)의 입법은 주지하듯 지난 10년 동안 한국 자원봉사계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숱한 논의와 많은 법안들이 등장했지만 아직도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17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법안 통과 통과 가능성 다시 점쳐지면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 만들어 지고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오랜 토론 끝에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동 법안은 지난 7월 12일 공청회를 거쳤다. 이제 15일 마지막 손질 후에 8월중 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혹은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법 통과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야 역시 민-관의 큰 합의가 이루어진 데다 별 정치성이 없어 연내에는 꼭 입법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넣고 있다. 7월 12일 현재 공청회를 통과한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내용을 다루고 이어 본론으로 향후의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

법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기획단에서 숱한 토론과정을 거쳤다. 법안 명칭에서부터 거의 전 조항이 합의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선 가능한 한 문제가 됐던 각 조항들을 짧게나마 모두 다뤄 보고자 한다.

1) 명칭

기본법, 지원법, 진흥법 중 명칭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 끝에 일단 ‘진흥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진흥법이 되도록, 내용에선 기본법적인 사항을 많이 규정했다.

2) 목적과 기본방향 (1조, 2조)

이 목적과 기본방향에선 특히 자원봉사의 기본법적인 측면을 강조,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 정의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그 활동의 기본원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이며, 활동이 ‘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이 되도록 해야 함을 담았다. 이는 특히 향후 이 법이 한국 자원봉사 활동의 교과서로 작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3) 용어의 정의 (3조)

(자원봉사단체)

이 조항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3항의 ‘자원봉사단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자원봉사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비영리단체’로 하자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대통령령의 규정’ 문구를 뺀 경우 모든 기관 단체를 다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조항들에서 이 법에 의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포상, 자원봉사자 보호, 관리, 조세감면 등등의 조항에서 모든 기관 단체들을 다 인정해 줄 순 없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결국 진입장벽을 없애고 모든 기관 단체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대통령령의 규정’ 문구를 뺐다. 대신 포상, 보호, 관리 등등의 조항에서 당초의 ‘자원봉사 단체’ 라는 문구를 빼고 대신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용어를 수정했다. 즉 단체에 대한 포상, 보호 등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포상, 보호 등을 하겠다는 뜻이다.

(자원봉사센터)

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상하리 만치 이에 대해선 큰 논쟁이 없었다. 모두들 쉽게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센터의 정의에 동의했다. 이는 센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정부부처가 작심(?)하고 법안에 임하고 있음을 감지(?)한 행자부 및 법안위원들이 쉽게 센터의 모든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사실, 각 부처의 센터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 되었으므로 이 법에서 제한을 하면 법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지원의 센터들과 함께 여성부, 문광부, 청소년부 등 모든 부처의 산하 센터들이 완전히 자유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법안위는 일부 법안위원의 주장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3조 3항의 ‘자원봉사단체’중 하나로 규정했다가 결국 센터협회 측의 주장에 따라 그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센터협회는 센터의 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조정’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라 결국 ‘협력’으로 바꾸는데 동의했다.

4) 국가 등의 책무 (4조)

이 조항에서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별 문제없이 통

과가 됐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제공 등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였다. 행자부가 삽입하고 싶어 하는 이 ‘정보제공’ 문구에 대해 특히 문광부,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반발을 했다.

각 부처의 전산망이 잘 가동되고 있는데 왜 행자부가 통합전산망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항의였다. 행자부는 그 같은 통합 의도가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합의를 못이룬 채 공청회 의제로 넘겨졌다.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6조)

국무총리 산하에 진흥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두는 안에 대해선 대체로 쉽게 합의가 됐다. 그러나 시, 도 등 지자체에 역시 진흥위원회를 두는 안은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삭제됐다. 굳이 법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중앙에 진흥위를 둘 경우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이 조항에서 특기할 점은 부처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란 단어를 삭제한 점이다. 당초 법안위 안에는 이 단어가 있었으나 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자칫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해 삭제를 했다.

6)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 장려 (7조)

이 조항 역시 많은 논란 끝에 3항에 “학교, 직장 등의 장은--”하며 등자를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즉, 자원봉사 활동의 공헌 인정을 왜 학교, 직장의 구성원들에게만 국한하느냐는 주장을 “이 조항은 선언적 조항이고 무엇보다 학교, 직장이 중요하니 그를 강조하고 나머지는 등--정도로 하자”며 설득했기 때문이다.

7) 자원봉사자 보호 (10조)

이 조항 역시 술한 논란 끝에 1항에 보호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당초의 안은 비록 선언적이지만 정부 외에 민간 자원봉사 단체, 센터들도 보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이다.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보험 등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임으로 일단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

8)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11조)

당초 법안위의 안은 ‘자원봉사 관리자’를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관리자 대신 그냥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언적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했다. 자원봉사관리자를 법에 두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4조)

이 협의회 조항이야말로 가장 논쟁이 심했던 조항이었다. 전체 기획단원 중 특히 새마을은 끝까지 이 협의회를 빼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다. 새마을 측의 주장은 협의회는 필요하되 단순 민간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마을 측의 주장을 제외하고 협의회와 관련, 문제가 된 것은 협의회 사업내용들이었다. 협의회 사업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협의회 조항에 그냥 모든 사업을 늘어놓는 안, ▷협의회 산하에 진흥원을 두고 정책개발, 교육 훈련, 조사연구 등은 별도로 빼는 안, ▷아예 협의회와 진흥원을 별개 단체로 나누고 사업도 확실하게 나누는 안 등 몇 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결국 논란 끝에 협의회 조항에 사업을 늘어놓는 첫 번째 안을 택하되, 협의회 사업이 너무 많으니 교육 훈련, 정책 개발 등 몇 가지 사업은 제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그들 교육 훈련 등의 사업은 협의회로 통일하기보다 각 분야별 기관 단체들이 알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정단체화 하면서 협의회를 단순히 행자부의 산하단체로 만들거나, 기존의 협의회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은 방법과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칙 안을 바꿔 현재의 협의회를 재창설, ‘관련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행자부에 재등기 하는 방향으로 했다.

10)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운영 등 (1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주체를 국가로 까지 확대했다. 이는 타 법령 (예,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이 그같이 국가 및 지자체를 설립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센터를 법인이 운영한다”는 기존의 문구도 “법인이 운영하거나 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케 한다”로 보다 자세히 바꿨다.

한편 15조 4항에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행자부 센터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센터 조항과 관련, 가장 난처한 태도를 보인 곳은 여성부였다. 여성부는 모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이 운영토록 강제할 경우 전국 지자체 직영의 여성자원활동센터(2년 내) 민간 이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성부는 시, 군, 구 단위에선 민간 위탁할 만한 여성단체들이 없고 별도의 예산도 없다면서 이 조항에 “지자체도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획단 위원들은 민간 운영을 주장해 일단 여성부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해 이 조항을 통과시켰다.

11) 자원봉사 단체 지원 (16조)

자원봉사협의회, 혹은 센터에 대한 지원 외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까지를 둔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일 것이다. 기획단은 당초엔 이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다고 막바지 회의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까지를 두는 것으로 했다.

이는 이 법안이 협의회와 센터만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 자칫 자원봉사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하고 있다). 단체지원규정을 두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따라 동 규정을 신설 추가한 것이다.

3. 이번 법안의 특징

그러면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기존의 자원봉사 법안들과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갖나?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다.

1) 인프라 면에서 기존 협의회안과 대동소이

이번 법안은 우선 자원봉사 인프라 면에선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지난해 만들어 각 정당에 제출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협의회 안 역시 중앙에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민간 전달체계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센터들을 두는 것으로 했었다. 센터들 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외에 각 분야별 센터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었다.

지난해 협의회 안과의 큰 차이라면 협의회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원을 두는 조항을 빼는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봉사의 기본원칙 명시

그러나 작년 협의회안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자원봉사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임을 명백히 했다. 즉 이 3원칙에 벗어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은 모두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남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민-관협력의 기본정신 하에’ 추진토록 해 정부 독주를 막았다.

3) 모든 사회적 혜택 조항 삭제

과거의 모든 자원봉사 법안들과 다른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체의 ‘사회적 혜택’ 조항을 빼는 것이다. 작년의 협의회 법안의 경우 2조 기본방향에서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공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 10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단체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선 모두 이 조항들을 빼다. 이는 자칫 사회적 혜택이나 경력인정 등의 조항이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나 제도를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실제로 최근 관련부처나 지자체, 또 일부 센터들이 무분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었다.

이 법안은 대신 ‘학교와 직장’에선 “자원봉사 활동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민간 조직체 차원에서 혜택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했다.

4) 자원봉사 관리자의 삭제

지난해 협의회안에 있었던 자원봉사 관리자 조항도 이번 법안에선 삭제를 했다. 이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치 못했다고 다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협의회 등

이 활성화되면 별도의 의견을 모아 전국적인 관리자 교육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 자원봉사센터의 문호 개방

이 법안에선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협의회 안은 단지 대략적인 용어설명만 하고 조문에서도 그 설립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었다. 이번에는 각 부처가 참가해 자신들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를 이 법에서 모두 인정해 주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

이처럼 이 법에선 자원봉사센터의 문호를 공식 개방한 만큼 앞으로는 환경부, 법무부, 외교교통상부 등도 산하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법령을 고쳐 센터를 만들고 지원할 수가 있게 됐다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이는 장차 총리실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조정해 갈 제1차적 심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다.

6)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이 법안은 처음으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법안이 결국 협의회와 센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단체들의 항의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7) 정부 책임과 민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

이 법안은 기존 협의회 법안에서 무분별하게 언급된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국가 등 정부와 민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다. 예를 들어 ‘보호’ 조항의 경우 과거엔 국가 및 지자체 외에도 민간기관 단체들이 보호의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이를 국가와 지자체만이 지도록 한 것이다. 반면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를 행하는 단체와 센터는--”으로 규정, 정부는 빼고 민간단체 및 센터들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8) 협의회 설립에 각 부처 참여

이 법안은 부칙에서 현재의 협의회를 재창설, 재인가, 등기도록 했다. 타 부처 공무원들은 그 재인가 과정에서 행자부가 정관승인을 관련부처와 협의토록 요청했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일로 그만큼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가 늘 것을 예고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 법통과 후의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최근 기획단이 합의하고 공청회까지 통과한 자원봉사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쟁점내용,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이 법안 통과된다면 한국의 민간 자원봉사계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변화 및 과제들이다.

1) 자원봉사의 순수성에 대한 개념 확산

우선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민간 자원봉사계는 무엇보다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되살리는 작업에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자원봉사 운동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상당부분 순수 자원봉사 활동이라고는 판단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이번에 만든 법안이 한국 자원봉사 운동의 기본 이념, 방향, 정의, 개념 등을 총괄 규정하는 ‘자원봉사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사회적 인정 등을 일체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이 과도하고, 일반화, 상례화 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선 자원봉사의 기본원칙들을 정했다. 즉, “사회적 보상, 인정, 강제 등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자원봉사 지도자들은 이 같은 법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① 기관 단체, 센터들의 의식 전환

먼저 자원봉사 기관 단체, 센터 종사자들부터 의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소위 자원봉사 관리(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보상을 필요한 일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센터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과도하다 생각될 만큼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자원봉사의 가치 면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공헌인정, 보상은 불규칙적, 비예측적, 그리고 사후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입학전형 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을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정(査定)변수라 해도 필수가 아닌 참조사항일 뿐이다. 센터나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보상 등도 마찬가지로 지어야 한다. 향후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원봉사협의회, 센터협회, 자원봉사 포럼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교육 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중, 고, 대학에서의 제도변화, 계몽활동

중, 고,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 내신반영, 사회봉사 학점제 등등의 강제적 행위들도 이 법의 통과와 함께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특히 중, 고학생들의 봉사 활동은 현재의 방법에서 크게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계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학생 자원봉사개선기획단’ (가칭)을 구성, 발전 방향을 연구·시행했으면 한다.

2) 자원봉사 운동의 민간주도

자원봉사의 개념이 순수토록 해야 할 과제와 함께 자원봉사 운동을 민간이 주도케 해야 할 일 역시 향후 한국 자원봉사계의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개입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의 지원은 바람직하면서도 자칫 지나친 개입은 ‘新 관변운동’을 초래케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민간 자원

봉사계가 관의 개입을 적절히 조절, 조정하는데 실패한다면 이 법은 자원봉사 발전에 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것이다. 향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민-관 파트너십의 제도화

민이 앞장서고 관이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십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를 법안이 규정한 각 민, 관 인프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총리실 산하 각 관련부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어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시책개발과 심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과연 이 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누구로 할 것인가? 또 민간 전문가로는 누가 참가할 것인가?

위원장이 총리가 되고 간사가 행자부 장관이 될 경우 자칫 이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역할은 자문위원 정도로 전락될 수가 있다. 참여정부의 타 정부 위원회들과 같이 민·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간사 역시 민·관 양 체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실무위원회 포함)? 또 협의회 의 회장 혹은 사무총장은 진흥위 및 실무위의 ‘당연직’ 멤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전국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을 이끌고 갈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갖는 단체가 된다. 따라서 그에 걸 맞는 조직, 예산, 인력, 활동 등이 있어야 한다.

법안에선 이번에 협의회를 전면 개편토록 했다. 정관을 재구성, 행자부에 재인가를 받도록 법안 부칙에 규정을 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직후 협의회는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 정관을 바꾸고 그에 따라 새로운 조직, 임원진 등을 선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조만간 20여명의 전문가들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발전기획단’ (가칭)을 구성, 협의회 재조직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 협의회가 향후 정부, 특히 진흥위원회 및 행자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선 협의회가 타 직종의 법정 협의체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들과 달리 진정 민간기구로 작동하려 한다면 예산의 정부 의존성부터 탈피토록 해야 한다. 예산 지원을 받되 그 정부 예산외에 회원단체들의 회비, 협찬·기부금 등 순수 민간예산이 상당부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임 및 공동대표 등 임원진들이 자원봉사 기관 단체 대표 등 소위 수혜자들로만 이루어져선 안 된다. 기업가, 퇴직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 타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진으로 상당수 포진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협의회가 예산 및 조직에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야만 관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그와 함께 회원 단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화합, 비정치성, 전문적

활동 등등 전국기구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행동을 할 때야 만이 정부와 대등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할 자원봉사계 지도자들은 그 점에서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자원봉사센터

법정단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들이 향후 지자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아마 이 관계 설정에 따라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이 ‘신 관변운동’이나,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센터의 설립주체는 지자체(관)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 (특히 행자부 지원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향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원의 ‘복지관’들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지자체에서 설립, 민간에 위탁을 한 뒤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의 운영이다. 현행 복지관들처럼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들 역시 지자체에 철저히 예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과 조금 달리, 민간 주도의 기구로 남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 까? 필자는 그 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역시 앞의 협의회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예산의 독립, 둘째는 조직의 독립이다.

관으로부터의 ‘일정한’ 예산 독립을 위해 센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자체 모금과 중앙의 민간 지원금을 받는 것일 것이다. 지역 모금을 위해서는 향후 자원봉사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반대할 사항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중앙의 민간지원금은 중앙차원의 ‘자원봉사 진흥기금’을 마련, 센터들이 내려 받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역시 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 및 국회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민간 기금관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합의 등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의 독립은 비교적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민간유지들을 대거 임원진에 끌어 드리는 것이다.

④ 예산지원 방법, 평가, 감독, 기타

앞으로 관이 예산지원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평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행자부가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 직접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또한 행자부가 직접 하고, 필요하면 진흥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센터들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현재처럼 지자체에 교부금을 ‘직접, 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야 할 까?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협의회 산하에 민-관 평가단을 구성해 차등 지원하거나,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하튼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자원봉사 관리 및 교육 훈련

① 체계적 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라 함은 관리와 함께 교육 훈련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는 크게 둘로 나누

어질 수 있다. 첫째는 일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고, 둘째는 자원봉사 지도자(조정자, 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다. 자원봉사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국적인 자원봉사 관리 및 교육 훈련작업이 등장해야 한다. 이는 자원봉사 운동의 체계화와 정리 정돈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곧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정관에 들어있는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는 조사 연구, 정책개발 건의, 국제교류 홍보 등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서도 진흥원이 곧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진흥원은 또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중앙차원의 교육·훈련작업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최종 법안에 선 협회회의 사업에 교육 훈련사항을 재삽입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행자부 위탁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선 ‘자원봉사관리자’(volunteer managers)(지도자, 조정자)급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관리·평가가, 지역에선 ‘일선 자원봉사자’(volunteers)에 대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교육 주체가 중앙의 경우는 협의회, 지역은 센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험 등 안전관리

이 법안에선 자원봉사자 보험 등 보호의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장차 그 보험의 실제 운영주체는 협의회, 혹은 지역 센터들이 될 것이다.

과연 평소의 자원봉사 활동도 보험을 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난재해 참여 봉사자만 보험을 들게 하나? 만약 센터에 보험을 들지 않고 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센터, 또 정부는 일체 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보호조항의 시행령은 만일 보호조치(예, 사전교육 등)가 충분치 못해 자원봉사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기관 단체, 센터를 처벌도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장차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4) 행정의 전국 직렬 및 병렬체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중앙에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까지는 조문화 하진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도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다. 그럴 경우 과연 중앙 및 시·도 진흥위원회간엔 어떤 관계가 될까? 또 행자부 및 타 부처들 간의 관계, 또 각 중앙부처와 시, 도간, 또 시·군·구간 어떤 행정 직렬의 모습을 띌까?

또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 역시 복잡할 수 있다. 전국협의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해고, 각 분야별 센터마다 중앙 센터를 두고 부처별 지원을 받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예, 청소년 전국센터, 여성 전국센터 등). 자칫 잘못하면 이 법안 통과 후 한국의 자원봉사계는 각 정부부처마다 자기분야의 자원봉사를 진흥하겠다며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복잡한 조직과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 있는 한 무엇인가 통일된 한 그림은 있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다.

5) 자원봉사 기관 단체 및 센터 간 관계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과 센터 등 지역 인프라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지역에서 센터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관(지자체)과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 외에 주변의 타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법안 추진과정에서 지역 센터들이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임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또 청소년, 여성센터 등 타 분야별 자원봉사센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중앙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다.

① 종합-분야별 센터 간 관계

과연 기초 시, 군, 구 지자체 단위에도 청소년, 여성, 복지 등 분야별 자원봉사센터들이 들어설 것인가? 그럴 경우 현행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인가?

필자는 법이 통과되면 분야별 부처들이 시, 군, 구 단위에도 자신들의 분야별 자원봉사센터들을 설립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를 위해 국가예산처를 향해 예산경쟁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지자체의 장 역시 모든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치인인 지자체의 장 입장에서 굳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조직체를 하나로 통합할 이유가 없고, 행정가의 입장에서조차 지자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 군, 구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질 것인가? 여성, 청소년, 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들을 타 센터로 다 뺀 상황에서 과연 무슨 ‘종합’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센터들이 난립 양상을 보일 때면 틀림없이 대책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② 센터-단체 간 관계

지역의 종합자원봉사센터들과 자원봉사단체들 간 향후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법안은 센터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 지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센터-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을 강제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개인, 또는 단체)을 지원하는 ‘지원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결성되는 시, 군, 구 단위에서의 센터-단체들 간 상호 협력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단체협의체가 구성돼 센터를 직접 위탁·경영하는 방법 (예,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센터 내부가 직접 단체 협의체가 되는 방법 (이사들을 단체장들로 구성), ▷센터와 단체들이 상호 별개로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방법 등이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센터가 단체들로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만 센터-센터 간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센터- 협의회 간 관계

시·도 단위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단체들 간의 관계가 시·군·구 단위에서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같아서도 안 된다. 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도의 경우 앞으로 시·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자연스레 결성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모든 시, 군, 구 단위에서까지는 협의회가 만들어 지진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시·도 협의회와 시·도 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까? 이에 대해 필자의 바람은 차라리 현재의 시·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 시·도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센터는 ‘시·도 자원봉사진흥원’으로, ▷협의회는 ‘시·도 협의회’로 각각 분리, 남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센터가 그 일에 앞장 설 때 현재의 센터와 단체 간 갈등이 시·도 차원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시·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흥원의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단체들의 활동을 돕고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훈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건의 등등의 일인 것이다. 시·도 센터가 마치 기초지자체의 센터들처럼 일선 자원봉사자나 모집해 교육하고 배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실 그 잘못 때문에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들 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필자는 광역 센터가 광역 시·도 자원봉사진흥원으로 굳건히 서고 그들이 중앙 협의회와 자원봉사진흥원과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될 때 비로써 센터- 단체 간 갈등이 해소되고, 언젠가 센터들이 그토록 원하는 ‘한국의 촛불재단’(The Points of Light Foundation)이 (혹 별도의) 전국기구로, 또 단체들의 축복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협의회 발제

자원복지봉사활동(Voluntarism)의
가치창조적 목표와 협의회 기능

김 영 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자원복지봉사활동(voluntarism)의 가치창조적 목표와 협의회의 기능

김 영 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한국자원복지문화개발원장

I. 자원복지봉사활동의 가치창조적 목표와 기본철학

1. 자원복지봉사활동의 가치창조적 목표(4단계목표)

가치이념에 입각한 자원복지봉사활동(자원봉사)의 가치창조적 목표는(4단계목표)

첫째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선의의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caring)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치유와 재활(curing and rehabilitation)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와 재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치유되고 사회재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활동원과 대상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민주복지시민으로 성숙 및 가치적 삶으로 변화·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소그룹과정의 지도를 통해).

셋째 가치적 목표는 시민의 사회정화 및 사회개혁(social reform)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의 변화를 기초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해체되어가는 공동체를 재생시키며,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정화와 제도의 개혁과 주민(기관)의 협동참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활성화됨으로 서로 믿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넷째 자원복지봉사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장애인이나 건강한 자, 또는 남녀노소가 차별 없이 정상화(normalization) 및 통합화(social integration)¹⁾이념에 따라 공동의 복지를 위해 사랑으로 더불어 참여하며(full participation),

1) 부성래, 「기독교사회복지 개념화를 위한 서설」, 『기독교와 사회복지』, 도서출판 예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창출하는데 있다.

2. 자원복지봉사철학 (보편적 가치)

자원복지봉사는 그 실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편적 가치(자원복지봉사철학)를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주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협동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즉

- (1)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확신
- (2)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신념
- (3) 인간은 기본적 욕구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주체적 존재임을 확신하고
- (4) 인간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 (5) 인간의 평등권과 기회균등권의 인정과
- (6) 인간상호 간의 사회적 책임 등을 신념으로 받아들일 것

이상의 보편적 가치에 정의가 선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치로서 인정되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자원복지봉사철학이 자원복지봉사의 기초가 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자원복지봉사철학은 1990년 9월 국제자원복지봉사연합회(IAVE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가 마련한 세계 자원복지봉사활동 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n Volunteering)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선언문에 의하면 자원복지봉사활동을 실천함에 있어 자원복지봉사활동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한 그들의 인종과 종교 혹은 신체적·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원복지봉사활동원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2) 자원복지봉사활동원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
- (3) 자원복지봉사활동원은 상호협력 하에 혹은 공동의 정신으로 자원복지봉사센터에 소속하여 보수 없이 공헌한다.
- (4) 자원복지봉사활동원은 지역사회 요구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5) 자원복지봉사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숙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며, 잠재력과 자립심 그리고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 (6)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가정과 사회 및 세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자원복지봉사활동은 헌법정신과 자원복지봉사철학을 전제로 할 때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 p. 95.

2) Noel Timms, 『Social Work Values : An Enquir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Boston, 1983, pp. 45-65.

II. 지역사회 조직의 원리 및 모형

P. M. 블라우(P. M. Blau)와 W. R. 스코트(W. Richard Scott)는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인 인간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대인은 조직속의 인간」이며 「현대사회의 특징은 사회의 한층 광범위한 특질을 지배하는 대규모적이고 복잡한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있다」³⁾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생활은 조직적이며 협동적이고 계획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원복지봉사활동도 개인의 산발적인 활동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보다 효과적인 자원복지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집단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조직(組織)이란 ?

사회학에서 집단(group)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위와 역할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공통의 목표와 관심이 있으며 성원의 행동과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고 그 위에 성원들 사이에 「우리들 감정」이 있어 다소라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집단이 조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집단의 구조화를 의미한다⁴⁾.

집단(集團)은 보통 군중·공중·대중 등의 미조직집단(未組織集團)과 조직집단(組織集團)으로 대별(大別)된다. 조직(組織)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사회학(社會學)에서는 조직을 집단(集團)의 한 종류로 규정한다. 따라서 조직집단(組織集團)과 동일시(同一視)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집단은 구조화된 집단을 말한다. 구조화란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지위(地位)와 역할(役割)」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제도화됨으로써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목표(目標)」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달성에 협력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조직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은 집단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체계화되어 성원이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역할분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각 역할 사이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이상은 조직(組織)을 정태적(靜態的)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조직을 동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조직은 통일적이고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행동(人間行動)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버나드(C. I. Barnard)는 「조직이란 2명이상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통합된 다양한 힘의 체계이다.」라고 하고, 길전유(吉田裕)는 「조직(organization)이란 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

3) Peter M. Blau & W. Richard Scott, Formal Organizations ; A Comparative Approach,

Handler Publishing Co., California , 1962(橋本眞·野崎治男譯, 『組織の理論と現實』上, ミネルヴァ書房, 1966, p.2).

4) 鹽原勉外 2人編, 『社會學の基礎知識』, 有斐閣, 1969, p.40.

동(cooperate)할 수 있도록 경영자와 관리간부에 의하여 통제(control)되고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조정(coordinate)되는 행동체계이다。」⁵⁾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의 본질에 대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역할(role)·활동(activity)의 합목적적인 체계와 회원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이 확대되고 그리고 「우리들 감정」이 형성될 때 그곳에 조직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조직론을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라는 과제에 적용하여 자원복지봉사기관(자원복지봉사센터)의 효과적인 조직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필자의 관심사이다.

자원복지봉사기관 조직의 구조화를 구상하는데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론이 H. B. 트레커(H. B. Trecker)의 「조직원리」와 C. I. Barnard의 조직론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트레커의 조직원리(組織原理)

트레커에 의하면 효과적인 조직구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정에서 형성되어 전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산된 프로그램을 단체전체로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이고 프로그램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구조이다.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단체의 여러 부분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복잡한 단체에서는 성원이 일상적인 기획(planning)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구조는 항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성원의 인격의 성장과 발달 --많은 조직들의 큰 목표중의 하나임--의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트레커의 「조직원리(組織原理)」⁶⁾는 자원복지봉사기관(自願福祉奉仕機關)의 조직방향(組織方向)을 설정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트레커가 제시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람직한 조직구조는 너무 크거나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하며 최소규모가 바람직하다.
- ② 조직구조는 시간·비용·지도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최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 ③ 조직집단내의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수속이 통일되고 서비스가 규칙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④ 구조가 적절할 경우 개인 및 집단의 책임영역이 명확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타인 또는 집단의 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협조할 수 있다.
- ⑤ 조직집단과 커뮤니티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타 기관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도표화한다. 여러 수준의 정부기관이 관계하거나 중앙본부 또는 지방의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와의 관계도 알기 쉽게 나타낸다.

5) 熊谷尙夫外 10人, 『經濟學大辭典』, 東洋經濟新報社, 1980, p. 839.

6) H.B.Trecker, New Understandings of Administration, Association Press, Ndw York: 1961(今岡健一郎 外 2人 譯, 『新しいアドミニストレーション』, 1977, pp.53-56).

- ⑥ 만족할 만한 구조는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임무를 질서정연하게 분류·체계화하고 같은 특성을 지닌 전문적인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특수부문체계로 만들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적절한 구조는 종적·횡적의 쌍방통행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⑧ 해당 조직집단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리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협조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⑨ 지역공동체의 서비스조직집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집단이 방침결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⑩ 바람직한 구조는 직원에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리일으키고 일에 만족감을 갖게 한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단체의 구조는 과정(process)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목적 및 프로그램과 함께ダイナミック하게 검토되어야 한다.⁷⁾
- ⑪ 발전적 조직구조는 각 전문부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기관의 목적과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는 구조이다.
- ⑫ 각부서의 업무의 전문화·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직구조라야 한다.
- ⑬ 각부서의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발·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그룹모임을 통해 직원상호간에 지도·지원(peer group supervision)할 수 있어야 한다.
- ⑭ 직원들이 기쁨과 보람 및 보상감을 느끼고 신바람이 나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조라야 한다.

3. 지역사회조직의 모형 및 제 원칙

1) 로스만의 지역사회조직의 3가지 실천모형

로스만(Jack Rothman)은 지역사회조직의 3가지 모형을

- ①지역사회개발 모형(locality development)=과정중심의 목표(process goals), ② 사회계획모형(social planning/policy= 과업중심의 목표(task goals), ③ 사회행동모형(social action=task and process goals)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입장을 기초로 미래지향적 가치창조적 목표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상기모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모형의 목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의 과정중심의 목표**는 (1)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집단들 간에 협동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2)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적인 협동체계를 구성케 한다. (3)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기반(power base)을 향상시킨다. (4)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문제와 욕구 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동

7) 上同

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5) 지역사회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협력적인 태도와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도력(indigenous leadership)을 개발 육성한다.

둘째의 과업중심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하거나, 지역사회의 기능과 관련한 문제해결과 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하거나,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기술적인 과정을 중시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정도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또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들에 따라 광범위 할 수도 있고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 할 수도 있다.

셋째의 사회행동모형은 지역사회의 주민과 공동관심 집단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및 보다 향상된 처우와 현실적 불만(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주민(단체)의 협동적 참여노력을 강조한다(Murray G. Ross(1967) 및 최일섭·류진석(1997), PP.40-58). 이상의 모형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모형에서(A Model, B Model, C Model 중에서) 시작하던지 간에 3가지 모형을 단계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2) 로스(Murray G. Ross)의 지역사회조직 실천에 있어서의 원칙

- (1) 연합회(협회)(association)의 결성은 지역사회주민(집단)의 현존하는 욕구와 문제에서 시작된다.
- (2)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들은 기관(집단)과 연계되고, 특정문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집약되어야 한다.
- (3)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욕구와 문제들은 지역사회주민들(조직들)에게 폭넓게 인식되어야 한다.
- (4)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연합회(협회)에는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중요한 집단(subgroup)들에 의해 지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지도자(공식적·비공식적)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 (5) 연합회(협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방법(methods of procedure)을 가져야 한다.
- (6) 연합회(협회)의 사업 중에는 주민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연합회(협회)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현재적(manifest)·잠재적(latent) 호의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 연합회(협회)는 소속회원 상호간과 지역사회와의 활발하고 효과적인 대화통로를 개발해야 한다.
- (9) 연합회(협회)는 협동적인 노력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지원하고

그 기관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0) 연합회(협의회)는 정상적인 업무상의 결정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차상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 (11) 연합회(협의회)는 지역사회의 현존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보조(pace)를 맞추어야 한다.
- (12) 연합회(협의회)는 효과적인 다양한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3) 연합회(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Murray G. Ross(1967), PP.157-202) 및 최일섭·류진석(1997), PP.160-181] .

3.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의 기능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의 기능은 협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일반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1) 사실발견(factfinding)

그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1) 지역사회의 자원복지봉사활동과 관계된 기관과 업무상태 및 재정상태 등을 포함한 기초자료 수집 2) 지역사회의 당면한 근본문제에 대한 장단기적인 조사 실시, 3) 자원복지봉사에 관한 특수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자원복지봉사기관들로 하여금 자체의 프로그램과 관계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 5) 다른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의 욕구·문제·사실 등의 발견

2) 자원복지봉사기관들 간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

두 번째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발전과 기관발전을 위해 기관들 간에 업무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기관들 간에 회의 와 연구모임, 2)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 3) 특수업무분담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3) 지역사회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로서의 역할(volunteer community center)

세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자원복지봉사기관 및 활동원을 위한 중요회의 및 대회 주최, 자원복지봉사(봉사)정책 수립,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의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지속적인 창조적인 변화매개체(change agent system)로서의 역할 등이다. 시·도 및 시·군·구 협의회에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특수 분야별 자원복지봉사활동 육성기관(단체)를 총괄하면

8). Arthur Dunham,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70, PP.440-441.

서 동시에 특수 분야별 기관(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자원복지봉사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활동 조정(activity coordination)

자원복지봉사활동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의뢰서비스, 서비스 내용에 관한 정보교환 및 활동 조정, 활동원 및 자원복지봉사육성기관의 지도·관리등 이다. 여기에서의 주요관심은 협의회는 개별적인 활동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대중과 자원복지봉사기관(센터)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서비스 기관과 구별되는 것이다.

5)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의 육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 (improving standards)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에 특수 분야별 자원복지봉사(봉사)육성기관(단체) 및 특수 분야별 000자원봉사센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이 많은데 이들을 지원·지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자원복지봉사활동을 전문화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로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육성하고 그 기관(센터)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집단적인 방법과 개별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집단적인 방법이란 공동조사연구, 업무기준에 관한 연구, 출판 및 배포, 회합을 통한 경험을 교환 등..., 개별적인 접근은 특정기관에 대해 자문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다.

6)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복지봉사증진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및 실천 (Joint planning and action)

협회의 여섯 번째 기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원복지봉사에 관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자원복지봉사기관들을 위한 프로그램, 업무기준,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 기관간의 공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정을 위한 계획이 주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특수한 사회문제(예: 각종의 사회복지문제를 기초로 한 인종관계, 만성병, 미혼모, 마약, 학원폭력, 청소년 비행문제, 실업자문제, 노숙자문제, 가족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7) 정보교환, 교육 및 홍보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일곱 번째의 기능은 정보교환 및 홍보, 전문지도자교육훈련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복지봉사기관의 명부의 발간, 정보 및 의뢰서비스, 각종간행물과 교육 자료의 제작 배포, 시민복지교육 및 지도자 교육훈련, 전산망 구축, 공청회의 개최 등이다.

8) 공동자원개발 및 재정안정 도모(adequate financing)

협회의 여덟 번째 기능은 자원복지봉사분야의 재정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이다. 1) 공동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위한 공동기금의 관리, 2) 기관들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자문, 3) 기관들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차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 하거나, 4) 운영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일.

9) 사회행동 기능(social action)

협회의 또 하나의 기능은 사회행동 기능인 것이다.

그 방법은 공공의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거나, 사회 특수계층에(예: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외국인 노동자, 등)의 복지 및 자원복지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서 협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특수계층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들과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행동은 특수계층의 이해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단체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노련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III.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의 협력체계 확립과 협회의 기능(역할)

1. 문제제기 및 제언

필자는 1964년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비롯하여 종합자원복지센터 연구와 실천체험, 및 자원복지(봉사)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한 주민과 기관(단체)의 조직화 등을 통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경험하고 있다. 1998년 이후에는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회를 창립하는 과정에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동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후 31개 시·군의 협회와 종합센터의 실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1998년 11월과 12월에, 또 1999년 10월과 11월에 경기도내 협회 및 종합자원봉사(복지)센터(31개)를 권역별로 순방하며 직원과 함께 연구지도모임을 가진바가 있다. 1999년 8월부터는 경기도 종합센터 소장직으로 2년6개월 동안 주1회 협회 및 종합센터의 업무를 지도 지원했다. 그 외에 한국자원봉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자원복지봉사협의체 및 종합센터를 방문 교육 및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타 40년여의 국내외의 자원복지활동 분야를 연구시찰, 교육훈련 및 지도 과정을 통하여, 특히 금번(2004,5월부터) 자원복지봉사 진흥법(기본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다양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체험과 연구를 통한 결론(문제제기 및 제언)은

1)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현황에 관한 기초 자료의 부족과 현장 직원들의 실천을 위한 목표의식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와 문제 및 가치창조적 목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현황과 기관들, 그리고 행정기관을 비

롯한 다양한 NGO(비정부기관)와 NPO(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과약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과학적 접근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가치창조적 자원복지(봉사)활동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관(단체)중심의 자선적·산발적·단편적 봉사서비스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자원복지봉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협력하고 주민과 더불어 단계적·가치창조적 목표 [①보호(caring), ②치유와 재활(curing and rehabilitation, ③사회개혁(social reform), ④정상화 및 통합화(normalization and integration)를 향해 전문적, 계획적, 협동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협회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2) 홍보 및 모집방법의 개혁과 접수상담과 기초교육훈련이 지역사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관계기관들의 협력 하에). 단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기관별로 실시한다.

3) 자원복지(봉사)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즉 전인적 인간화, 민주복지시민교육, 가정기능회복,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 실용적 체계적 계획적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4)지역사회 활동원들을 지역사회(동 단위별) 및 전문영역별로 소그룹으로 조직화 하여 전문적으로 지도, 지원함이 필요하다(supervision).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의 프로그램들이 궁극적으로는 시민공동의 복지목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기 위해 기관별로 특성화(전문화)됨과 동시에 협력하여 공동의 복지목표를 위해 통합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5) 기관책임자의 자원복지(봉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 의지표현이 필요하다.

6) 시·도, 시·군, 구 협의회 및 종합센터의 담당직원이 전문가로서의 철학적 신념과 전문적 능력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들이 전문가로서의 신분이 보장되고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7) 전문적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훈련·지도·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정식직원임용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도 단위 단체협의회와 종합센터(시군구 포함) 및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

8)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특성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폭넓은 협력체계(협의회)의 조직화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종합센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와 종합센터의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9) 지역사회를 중심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 및 행정기관의 활동들이 관계분야별로 연계한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담당공무원과 타 기관의 직원들 및 기관장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분야별로 전문화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지역사회(시·군·구) 협의회 및 종합센터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관심과 협력·지원이 절대로 필요하다(경기도의 사례 참고).

1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회와 종합센터의 바람직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자

체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쉽게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직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협의회와 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도 앞으로는 중앙집중식, 일회성·행사성 프로그램의 수준을 초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3) 협의회 및 종합센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단체)들에 의한 또 그들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통합적 전문매체이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기관들이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도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대표들이 수시로 모여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14)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협의회 및 종합센터, 그리고 기관(단체)의 기능(역할)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달라야 한다(필자의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 방법”학문사, p.412 참고) .

15)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전문화(특성화) 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 공동의 복지목표를 향해 역할을 분담하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 기능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는 약한 부분이지만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기본과제임을 감안하여 도전할 필요가 있다.

16) 지역사회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전문봉사단의 조직화 필요: 예: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전문봉사단 육성 프로그램 참고로 각 지역사회에도 조직화가 필요하다.

요컨대 지역사회(시·도, 시·군·구, 동 단위)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긴급한 요구에 기초하면서 理想社會로서의 “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다양한 기능집단)들이 더불어 협동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전문기관인 지역사회협의회·종합센터의 지도·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시·도, 시·군·구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종합센터육성의 필요성과 그 모형

2001년은 “세계자원복지활동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 2001)”로 세계가 경축하며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창조적 삶의 목표를 향해 더불어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2002년 11월에는 17차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 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의 자원복지활동의 시각을 폭넓게 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집단들이 협동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참고하면서 우리도 분명한 가치창조적 목표의식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주민과 다양한 기능집단들이 더욱 분발하고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의 자원복지활동이 지금까지는 기관·단체 중심적이고, 행사성, 일회성(단기성)프로그램, 이해관계성, 그리고 자선적 의미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 차원을 넘어선 자원복지봉사활동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케 하고,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다양화 하면서도 역할분담과 전문화(특성화), 공동의 복

지목표(행복한 삶)를 위해 계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존중과 사랑을 기초로 한 민주복지시민육성과 가정기능회복 및 지역사회 공동체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생하면서 더불어 복지적 삶을 살아가 수 있는 공동체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인간의 가치창조적 삶과 전문적 계획적 협동적 삶의 지속적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책임있는 민주복지시민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도전과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의 기초는 역시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voluntarism)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체계적, 통합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의 오랜 기간의 연구와 현장체험을 통한 하나의 가설로서 제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특수한 기관(단체)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와 동단위가 연계된)의 다양한 특수 분야 혹은 전문분야의 자원복지(봉사)육성기관·단체들이 특성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시민공동의 복지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 전문적으로 통합·조정·지원·관리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기관으로서의 폭넓은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다양한 전문분야들의 연합)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전문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가 운영하는 전문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특수 분야별(전문분야)자원봉사기관·단체들이 연합하여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기관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통칭 “지역사회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입장(센터가 먼저 마련된 상황)에서는 그 반대모형도 가능할 수 있으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적인 여건(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한)에서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즉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매개가 되어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체를 구성하는 모형이다.

이상의 협의회를 기초로 한 종합센터의 모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1) 전국수준에는 “중앙(한국)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에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두고, 2) 16개 광역시·도 단위에는 “00시·도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00시·도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한다. 3) 시·군·구 단위에는 “00시·군·구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시·군·구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동 단위 센터(혹은 사무소)를 육성지도 지원하는 모형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시·군·구 협의회의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몇 개의 부처에서 000자원봉사(자원활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전문분야별센터를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이러한 전문조직들이 더욱 발전하고 가치창조적 목표를 향해 일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조직으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연합조직(연합회)을 만들어 전문분야별로도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자원복지봉사단체라면 청소년자원복지봉사연맹 또는 연합회 등의 명칭으로 협의회와는 구분되면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이다.

이상의 협의회를 기초로 한 자원복지(봉사)센터모형은 1996년 경기도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이 협력하여 “자원복지(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초

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자원복지(봉사)육성기관들이 설립되었고,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전문 자원복지육성기관들은 진정한 볼런터리즘(Voluntarism)의 理念과 基本哲學을 기초로 사심 없이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문제를 극복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공의 이익과 사회변화·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인간성회복과 가정기능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지역사회복지문화 창출과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변화매개체계(professional change agent system)로서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배치 또는 육성은 필수적 조건이 된다.

이상과 같은 전문변화매개체계육성은 “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 모형이 바로 지역사회(시·군·구와 동을 연계한)를 기초로 한 단체협의회 구성을 토대로 한 종합센터 모형인 것이다.

3. 시 도 및 시·군·구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종합센터육성의 목적

1) 지역 사회 시민의 공동의 욕구·문제 또는 활동 현황을 연구 개발하여 지역 자원복지활동의 종합계획의 기초로 하고, 자원복지활동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전인적 인간화(인간성회복)와 사회성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건전하고 복된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파트너십 정신을 갖고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동 참여할 수 있는 민주복지시민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향상시키며,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의 저변 확대한다.

2)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복지기관들(NGO 및 NPO포함)이 집단 이기주의적 경향을 예방하고 민과 민, 민과 관의 협동적 관계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의 전문지도자 육성과 주민참여능력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집단들의 전문적 체계적 발전과 역할분담 및 협동적 참여로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창출에 기여케 한다.

3)지역사회 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민간기관(단체)의 대표기구로서 정부 및 행정기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정책 건의 및 지역 사회 자원복지활동의 중·장기 발전 계획 공동연구 및 협동추진, 그리고 예산지원 등의 협의를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협의회/종합센터와 정보센터를 육성하여 전문지도자육성을 기초로 전문가들이 실무를 담당케 함으로 전문적 체계적 홍보를 비롯한 접수상담, 참여 신청자들을 위한 신속한 기초교육훈련(전문분야별 교육은 특수·전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 배치 및 서비스, 그리고 전문적 지도와 지원, 그리고 체계적 관리 등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공동의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조직화(기관들의 조직화 및 시민의 조직화), 그리고 지역대회 등을 통한 주민

의 복지 마인드 고양과 주민(기관)의 협동적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복지(봉사)기관들의 특성적(전문적) 발전을 지원·지도 및 기관간의 교류와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강화로 기관(단체)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과 경쟁에 따른 갈등관계의 협의 조정 등에 그 목적이 있다.

5)지역 사회의 주민 공동의 심각한 현안 문제와 공동의 복지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들과 주민들이 공동관심을 갖게 하면서 협력케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연구·개발케 하고 실천케 하며, 정책·제도 개발 등에 동참케 한다(예):최근에 우리나라에는 학원붕괴 문제와 청소년폭력과 흡연 및 마약문제, 사이버중독문제, 사고와 재난문제, 그리고 인간성 상실, 가족해체현상과 공동체사회해체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긴급한 문제들을 접할 때 협의회와 종합센터에서는 선도자로서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먼저 책임 있는 시민과 더불어 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전문기관들, 그리고 행정기관과 협의하면서 공동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체계적 계획적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경기도 및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학교·가정·우리 마을 지킴이 프로그램"인 것이다.

6)지역사회주민들로 하여금 애국애족(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게 하며 자원복지 활동의 이념인 정상화와 통합화 및 협동참여(normalization, intergration, and full participation), 즉 “더불어 사는 민주복지 공동체문화의 창출 및 공동의 복지목표(생명존중과 사랑·정의·자유·평화·행복을 더불어 누리는 삶)”를 위한 기초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4. 자원복지봉사단체협의회와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와의 관계

지역사회협의회는 자원복지활동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특수 분야(전문분야)별 자원복지활동 육성기관들의 협력체로서 지역사회 자원복지(봉사)활동의 공동목표를 향한 통합적 발전과 특수 분야별 자원복지(봉사)기관들의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민간조직으로서의 협의회(council)를 말한다. 이들 협의회는 동 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시·도 협의회 및 전국(중앙)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동 협의회, 시·군·구 협의회는 동 및 시·군·구 종합자원복지센터와 동격 혹은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의 상위조직으로 그 기능(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적 협동적 위치에 있다.

이때 협의회와 종합센터의 기능(역할)에는 차이가 있으면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

즉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전기한 협의회의 기능(역할)을 전제로 하면서 1) 전문지도자육성, 2) 지역사회 자원복지(봉사)활동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3)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의 중·장

기 발전계획 수립과 4) 회원확보와 회원기관(단체)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그리고 확대조직화, 5) 행정기관과의 협조관계조성 및 협의회(종합센터)의 운영재정확보와 협의조정, 그리고 정책자문 및 건의 등 6) 국내외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간의 정보와 프로그램 교류 및 협력, 7) 지역사회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기금조성과 회원기관 지원, 8) 종합센터육성(종합정보센터육성 포함)과 전문분야별 활동단 조직화 9)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 10) 전문프로그램 개발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육성 지원 등, 11) 지역사회 공동세미나 및 대회, 12) 종합센터 소장(경험 있는 전문가) 임명, 13. 기타 기능(역할) 등을 기본으로 한다.

협의회가 이상과 같은 기능을 활성화 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기관(단체)장들을 기본으로 전문가와, 기타 기업가와 지역사회유지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협의회는 기능을 활성화 하며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역할)을 감당하면서 공동의 복지목표를 향한 실천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전문화, 통합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을 전제로 한 사무국을 두든가 또는 종합자원복지(봉사)센터의 역할이 필수적 과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가 종합센터를 육성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전문종합센터로 협의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과 다양한 기관들과 더불어 자원복지활동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통합조정 및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종합실천 전문기관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센터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문화 체계화 통합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전문변화매개체계(professional change agent system)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종합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복지기관(단체)들을 지도, 발전,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실무를 담당할 위치에 있으므로 기타 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지도, 지원,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홍보, 교육, 배치, 실천, 지도, 지원, 정보교환 및 교류, 프로그램연구개발 등)내용 면에 있어서도 기타 기관들과는 차별화된 내용이 되어야 하고, 선도적 위치에서 전문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공동의 복지목표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출을 위해 주민과 기관들이 협력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협의회와 종합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지역사회의 자원복지(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설립목적과 지역사회주민 공동의 복지목표(더불어 사는 민주복지공동체 창출)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로 그 역할이 다르면서도 보완적이며 협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는 철학적 신념으로 무장된 전문직원의 배치와 전문적 통합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가 된다(김영호 외 5인, 『자원복지(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강남대출판부, 1998, 참고).



센터발제

자원봉사진흥법 제정 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안 승 화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원봉사 진흥법 제정 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안승화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1. 여는 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한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원봉사 진흥법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이번에도 각각의 이견으로 불안함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언제 또 다른 안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진흥법이 서로의 이해관계보다는 순수한 본연의 가치를 지닌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목적에 우선하여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향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연계, 개발, 조정 등의 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빠른 사회변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적응과 충격은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오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제도적 마련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의 힘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사회영역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나 아직은 대단히 미흡하다. 또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공익과 공공선 및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점점 더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숭선수범하는 구심점의 결여가 심각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현상들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제가 자원봉사센터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 설립 초기부터 대두되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센터는 크게 자치단체의 직영(혼합직영 포함)과 민간 위탁, 단독법인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248 개의 센터는 96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매년 35.1%, 24.6%, 26.3%의 증가로 2004년 최근까지 설치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설치되지

많은 지역은 자원봉사 진흥법이 통과될 예정인 8월 이후에는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간에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던 센터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의 지연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으로 예산부족과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가 어렵고,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로 50%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담당(혼합직영 제외)함으로 인하여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민간위탁의 경우 단체협의회와 비영리 법인, 새마을 등에서 위탁하고 있으나 특정단체 산하기구 정도로 인식되어 연계, 조정의 역할이 어려워 센터로서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 다양한 조직과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많다.

셋째,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지역사회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는 설립운영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많은 여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는 주제 발표에서 보았듯이 자원봉사진흥법 제정 후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센터의 난립이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적, 재정적 문제를 안고서까지 설치되지는 않으리라 믿으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시·군의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현황

오늘날 자원봉사가 생활화되고 있는 선진 국가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노력에 관한 참여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자원봉사단체가 생겨났고,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도 시작되었다.

2004년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설치, 운영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시·도 별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시·도	직원현황	개소 수	직영	민간	법인	시·도	직원현황	개소 수	직영	민간	법인
서울	112	26	23	2	1	대전	28	6	6	0	
부산	40	17	1	16		울산	27	3	3	3	
대구	28	9		9		경기	142	32	13	18	1
인천	25	11	9	2		강원	58	19	12	6	1
광주	20	6		1	4	충남	31	16	5	11	
전북	32	15	4	11		경남	73	21	20	1	
전남	58	23	21	2		제주	17	5	4	1	
경북	79	24	7	16	1	충북	31	13	11	2	

16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전국에 248개소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799명이 근무하고 있어 3.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별 구체적인 인력현황을 보면 1명에서 9명까지 다양한 조직형태를 볼 수 있으며 1명이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

1>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광역시, 도 자원봉사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의 자원봉사활성화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예산지원과 행정지원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시·도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 단위 센터의 자원봉사담당 직원, 코디네이터, 전문지도자, 관리책임자 등의 양성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시·도내 자원봉사센터의 실시, 추진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정보자료실 제공 등 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육성지원 한다.

넷째, 광역시·도 수준의 자원봉사 의식개발 및 종합적인 축제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개발적·선진적인 모델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여섯째, 광역시·도 수준의 단체, 기업, 노조, 농협, 축협, 교육위원회, 시설협의회, 학교, 사회복지협의회 기타 등의 협동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자원봉사 육성기금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일곱째, 광역시·도에 대한 정책자문 및 대안을 제시한다.

여덟째, 광역시·도 단위의 세미나 및 교류사업 추진한다.

2>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가장 정통한 곳이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참여와 지도력이 집결되는 곳이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장려하는 기구로 운영주체를 법인화 하거나 지역사회 비영리 법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담당할 수 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사회마다 요구와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의 요구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들로는 청소년 선도, 범죄, 마약, 가정폭력, 공공기관 봉사, 방과 후 교육 등 개인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교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시·군·구의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48개가 설립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자를 개발하여 자원봉사의 욕구가 있는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 자원봉사정보망 구축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도 이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자원봉사정보센터로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처를 연결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연합체를 건설하는 역할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때 자원봉사자들을 조정, 연계에 중점을 두어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효과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단체들의 정체성과 조직운영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자원봉사 조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각종 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조사, 연구 활동의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 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자원봉사자의 욕구파악을 위한 조사, 자원봉사활동의 현상파악을 위한 조사 등이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홍보자료를 보급하여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의식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강화한다.

이밖에, 협력체계 조직의 각종 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중심의 교육훈련 및 관리,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인정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강화노력이 중요하다.

4. 향후 종합자원봉사 센터의 발전 방향

향후 자원봉사 진흥법이 제정되면 현존하는 자원봉사센터 및 새롭게 설립될 자원봉사센터와 차별화하고 중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업무를 어떻게 조절하며 선의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위상이 상승된다면 그에 못지않은 센터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정립에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게 될 수 있다.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책임과 윤리경영에 부담을 갖게 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에 기반 한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적인 위상과 기능의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1> 자원봉사센터의 체질 개선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센터 정체성 확립과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및 자원봉사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윤리 운영 마케팅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로 몰려드는 자원봉사(여가, 오락, 스포츠, 환경, 건강, 자기개발 등)를 위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영역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자원봉사센터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배치와 이에 따른 활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갖는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자원봉사 관리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전산화, 전문화를 통해 센터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사회 책임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회인식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리조정자의 역할요소 중 중요한 요인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 욕구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개발과 개발자원을 집중하여 가속화하고 자원봉사를 사회 예방적(여가 및 자기개발, 체험) 측면의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으로는 향후 자원봉사 지원법이 제정된 후 새롭게 밀려드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과, 여가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3> 네트워킹 및 아웃소싱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방향은 각 지역의 인구 구성과 지리적인 특성이 상이한 만큼 연관되는 활동 및 조직끼리 공조를 통해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교육, 체험, 자기개발, 여가선용, 오락) 주변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자원봉사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원봉사조직 및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조직간 제휴,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원봉사조직과 시너지가 많은 연관조직 및 새롭게 떠오르는 비영리조직과 과감한 제휴와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도 다양화 광역화되고 있어 지역 센터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인 센터 운영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 조직과 연계 및 영리 조직(관광, 레저, 스포츠 등) 연계활동에 참여하는 전략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4> 지역사회 조직 육성 강화

지역자원봉사센터의 발전방향의 다른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의 질적심화를 추구함은 자원봉사자의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 확대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의 질적강화에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개개인의 역량을 심화하기 위하여 소그룹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역특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생활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조직화 및 조직개발, 자원연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모색할 때에 소그룹의 풀뿌리 조직의 육성은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의 변화노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5> 범주 확대의 종합화

최근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개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다양함 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처음에 자원

봉사활동이 개발될 때에는 소외된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조 활동,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과 고아를 돕는 보호활동 등 사회복지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시민사회 생활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활동, 지역사회안전유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소비자 등 여가 생활과 관련된 활동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NPO활동의 분야의 확대와 그에 따르는 활동경계의 자유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해야할 자원봉사 분야도 넓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센터의 역량을 광범위한 영역으로 종합화로 자원봉사 활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5. 닫는 글

지방의 분권화로 인한 주민들의 다양욕구 불만과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대립관계의 심화는 시민사회의 지역사회 관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진흥법의 제정은 향후 자원봉사 영역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정체성과 목표에 기반 한 역할의 가치설정은 중요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영역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만큼의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려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전문성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방법의 전문화와 역할의 경계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네트워크로 자원을 공유하고, 자원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동배외, 1996, 전국자원봉사센터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봉사 단체협의회
2. 김성희편저, 1997, 센터운영의 길잡이,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3. 김미숙외, 1998,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8, 경기도
5. 이성록 2004 자원봉사센터 정체성과 혁신방안



학생 발제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제정 이후 전망과 과제
-학생봉사활동-

김 정 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전망과 과제

- 학생봉사활동 -

김 정 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I. 학생봉사활동 제도 도입과 변화 과정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도록 하는 청소년 활동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주부들의 봉사활동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으나 하나의 제도로써 도입된 것은 지난 '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수립한 제2차 대통령 보고서인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인 1991년에 체육청소년부가 수립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연구'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제도화하려 했었으나 계획의 축소변경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5. 31 교육개혁방안」은 종전의 인성교육 방법의 개선책으로서 지식중심의 도덕·윤리교육에서 벗어나 대화,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윤리를 내면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봉사활동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개발과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함양에 목표를 두고, '청소년들의 학내·외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을 「종합생활기록부(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다.

상기 교육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96년 2월 「'9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교육개혁 중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실천과제임을 지적하고, 시·도 교육청별 봉사활동 계획 수립(봉사활동 영역 및 내용, 봉사활동 연수자료, 대상기관 선정 등을 포함), 각급 학교 봉사활동 연간 계획 수립, 봉사활동 기본방침(학교계획 또는 개인계획, 활동계획에 대한 학교의 사전 승인, 개인별 실적을 학년말에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 등)등의 내용을 시달하였다. 교육부는 다시 동년 2월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장학자료 제112호)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96학년도부터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중학생들의 연간 봉사활동 시간, 시간에 따른 점수 등을 정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 내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1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봉사활동은 특별활동의 하나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연간 68시간의 특별활동 속에서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시간(대체로 10시간 정도)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도 변화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아직까지 일부 시·도에서는 중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화하여 고등학교 입학 시 내신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상에 특별활동의 하나로 운영되는 봉사활동 기록이 학생 개인의 계획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입학 선발권의 자율로 인해 일부 대학에 한해서 고등학교 봉사활동 시간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진흥법 제정과 학생자원봉사활동 전망

최근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가칭)「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동 법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방향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원칙을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위해 특별히 학교와 직장에서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위의 조문은 앞으로의 학생봉사활동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게 해주고 있다.

첫째, 학교는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활동이나 대학의 졸업필수 또는 교양 선택 등의 과목으로 운영되는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학생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학생들의 봉사활동 기록은 특별활동의 하나로 운영되는 봉사활동 기록과 이 법에 의한, 즉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구분되어 기록·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관리는 당장에는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봉사활동란'의 비고란에 '특별' 또는

‘자원’이라고 구분 기재하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된다.

셋째,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 교사 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전문가 등에 의해서 지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교사나 자원봉사전문가들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넷째,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인정의 방법으로는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학교에서의 표창, 상급학교 진학 시 내신반영, 대학 입학에서의 전형반영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인정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기서 인정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 일본의 공립학교 교사 채용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관련법 개정 없이도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 시 지원교사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다.

법안에서 규정하고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이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학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금까지의 봉사학습의 관점만이 아닌, 인성함양과 공동체 의식개발이라는 자원봉사활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Ⅲ.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장려가 비록 선언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실효성을 갖고,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생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추진체계이다. 여기에는 중앙 부처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시도 교육청, 그리고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들 수 있으며, 대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추진 라인(line)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할을 살펴 볼 때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하부라인에 시달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별도의 예산지원이나 하드웨어 구축은 어렵다고 본다. 결국 일선 학교 교장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이 지도의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앞으로 학교장 및 교사들에 의한 연찬회, 지도교사 연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자원봉사센터나 단체의 학생자원봉사자 지도·관리 역할 강화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선 학교 중심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센터(청소년, 여성, 지역, 사회복지 등)나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청소년 관련 지식, 예컨대 의사소통기술, 집단지도방법, 청소년 발달심리,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자론 등의 이론과 지식,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에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며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과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고 다양한 형

태의 지도자 연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자원봉사센터나 단체의 지도자 역할 중의 하나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전의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쉽게 허물 수 있다고 보며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지도자의 개입과 공동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자원봉사자 수요처에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교육, 안전 환경 조성,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방안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방법으로 학생 개인 단위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동아리 활동이나 가족단위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시스템 개발이라고 본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시간과 활동내용을 기재하는 양적 평가형태로는 공헌 인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 발제

대학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신 동 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 사무국장>

대학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신 동 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 사무국장

1. 서언

흔히 대학의 이념 또는 역할은 교육, 연구, 봉사에 있다고 한다. 이 역할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목적에 따라 또 어떠한 역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학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왔지만, 그러한 목적을 구현하려는 방향에는 일치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대학의 역할은 주로 교육에 치중하였고, 연구의 기능은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는 일부 교수들의 대정부 정책자문이나,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또는 야학 등을 통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경제개발의 성과에 따라 이전보다 생활은 나아졌고, 교육과 연구에 치중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이나, 생존권과 관련한 노동운동, 야학 등을 통하여 대학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대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IT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또 제기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NGO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들은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통하여 형성된 지도계층들과 그간의 사회발전과정에서 자각한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운동, 환경·생명운동, 교육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화·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현상들을 정부나 사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행태에 머물러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움직임들은 더욱 활발해져 이제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학의 경우, 그동안 초보적인 수준의 자원봉사활동에서 '97년에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의회가 창립되면서부터 대학의 사회봉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미미하나마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선도적인 대학에서는 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전문대 포함) 전반을 놓고 보면, 아직도 반수 이상의 대학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도 아직은 교육의 과정으로서의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고에서는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원봉사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국가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학 부문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인 정책도 합의되고 또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선진 제국 대학들의 활동에 비하면, 활동 주체들의 운영체계나 타 기관간의 협력, 지원 등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 상당히 취약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대학, 정부, 기업, 협의체(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으로 나누어 주로 각 주체의 정책적 접근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가. 대학

최근 수년간 대학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인력이나 재정 등을 투입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 대학의 관심도에 따라 그 격차는 크다.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오늘날의 대학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시각이 구태의연한 대학 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한국 대학은 그 고유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서 상아탑적인 방어벽을 치고,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대학에서 개설한 모든 학문은 지역사회로부터, 국가사회로부터, 세계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대학교육의 졸업자들은 사회로부터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도덕성과 시민정신의 함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대 개혁을 하여야하며, 그것은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들은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을 위한 모든 전공교육과정의 개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대학교육과정을 지금과 같이 죽어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지구촌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자신의 전공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자극

과 도전의식을 갖추게 될 것이며, 봉사학습과정을 통하여 도덕성과 시민의식의 함양도 함께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은 봉사학습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봉사학습센터를 설립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봉사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연락, 집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정부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이 제도를 통하여 추구하는 정부의 목표는 “ 민주시민 역량배양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제1조<목적>)이 될 것이다. 대학교육 스스로의 목표도 그러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교육의 결과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도덕적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상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인재상을 길러내는데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봉사학습과정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의 그간의 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교육과정을 봉사학습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 전 사회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 요청된다. 정부는 현재의 대학교육과정을 봉사학습체제로 전환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연구.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각 부처의 교육의 지원에 관한 역할을 통합 . 조정할 수 있는 봉사학습국 또는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봉사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부서의 신설에는 우리나라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학술연구비를 제외한 교육의 진흥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에 투자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봉사학습체제로의 전환에는 전 사회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나아가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각 분야별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협력이 요청된다. 이에 관한 제도적인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사회 각 기관에 대해 적정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또는 조치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봉사학습의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반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에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같은 대학간의 협의체에 위탁하여 대학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정부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추진하는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예산을 “학예술행동지원” 과목이 아니라 대학의 봉사학습지원을 위한 별도의 과목을 두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봉사학습교육과

정으므로 개혁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요체이며, 오늘날의 한국 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개혁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정책기조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기업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주요한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 직접 봉사단을 조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거나, 자원봉사 관련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사회봉사의 상품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기업과 대학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협력관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기업은 대학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여 왔다. 한편으로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대학 졸업생의 수준 저하를 비판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요구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한국 대학교육 수준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수준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수십 년 후에는 국가의 정체성마저 도전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정부나 기업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기업이 장학금이나, 건물 기증 등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지원이지만,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그 주요한 방안의 하나가 기업과 대학의 이익이 공존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상품에 대한 홍보전략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은 교육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전공학문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봉사학습활동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개혁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다. 아울러 학생의 도덕성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은 스스로 연구하고 참여하는 실험실습이며, 인턴십 과정을 밟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이를 통하여 대학과 기업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며, 대학과 기업이 기대하는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은 학생의 봉사학습활동에 대해 별도의 조직을 두어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대학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각 사업장에 봉사활동의 장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사업은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같은 전국적인 단체에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과 대학간의 연계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에 관련된 제반 고려사항은 별도의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그 이윤의 일정부분을 대학의 봉사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고, 우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 협의체(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이하 ‘ 대사협 ’이라 칭함)

전국의 대학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사협과 같은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대학에서의 봉사학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사협에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봉사학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실태 파악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봉사학습에 관한 워크숍 및 프로그램개발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정부, 기업, 사회, 대학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대사협 내에 봉사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회원대학의 봉사학습센터를 지원한다.

3. 맺음말

대학의 봉사학습체제 구축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내실을 위해 꼭 실천해야 될 주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로이 제정될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의 제1조(목적)에서 언급된 ‘ 민주시민의 역량배양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 ’의 장기적 초석이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와 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기대하는 우수한 인재개발의 산실이 될 수 있으리 라고도 생각된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대학과 정부, 기업, 그리고 사회의 대표가 만나 이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부노인발제

노인자원봉사활동
현황과 과제

김미라 <무연봉사단 단장>

노인자원봉사활동 현황과 과제

김미라⁹⁾

무연봉사단 단장

1. 서론

오늘날 의학의 획기적인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영양 및 건강관리의 개선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또한 저 출생과 저 사망률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3.1%에서, 1980년 3.8%, 1990년 5.1%로 늘어났고 2000년에는 7.2%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7%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1%선을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 될 전망이다. 그리고 2026년이면 20% 이상의 초 고령사회가 된다(통계청, 2001).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우선 부양비의 증가문제이다. 노령인구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노인부양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2030년에 이르면 노년부양비가 현재 보다 3배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2000년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년부양비는 불과 10명이나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 2030년대부터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비의 급증은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라는 새로운 양상의 사회적 갈등을 가져 올 것이다.

한편 증가된 노년기에 있어서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승덕, 1996). 노년기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이므로 핵가족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노인의 역할 및 지위상실 그리고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자연적 지지구조가 파괴되면서 현대사회의 필연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질적 삶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박소윤, 1999; 고승덕, 1996).

그러므로 고령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노인들이 노년기 생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퇴직 이후의 생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직 이후부터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인 '제3의 연령층'에 상당수가 머물며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9) 무연봉사단 단장,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고령인들이 겪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생 후반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된다. 최근 은퇴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사고가 과거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되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이성록, 1995).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노인들은 과거 보다 활동적이고 건강의식을 갖고 있으며 참여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미라, 2002).

2. 노인자원봉사 현황과 삶의 질

1)노인의 자원봉사이론

먼저 인간이 노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활동이론에 의하면 중년기와 노년기에 있어서 활동에는 큰 변함이 없고, 노년기에도 사람들은 중년기와 마찬가지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만약 노년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역할이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전의 역할이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 이에 상응하여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이성록, 2003).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생물학적 변화와 육체적 건강약화를 제외하고는 중년과 동일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 퇴직으로 인한 역할부재에 대신할 만한 활동을 찾아 사회참여를 추구한다. 동시에 이들은 사회참여의 범위가 클수록 그리고 중년기에 가졌던 활동유형과 별 차이가 없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갖게 된다.

한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보상과 관련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사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이론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가치 있는 것의 주고받음, 즉 교환을 통하여 사회생활이 지속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회교환의 방식은, 사회적 교환은 반드시 주고받는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교환도 가능하다(P. Blau, 1964)는 주장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즉,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이 이타적 행동을 높게 평가할 경우, 수혜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보상을 받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터 블라우가 언급한 제 3자를 통한 사회적 보상을 충실히 해 준다면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노인자원봉사 활동현황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단체

나 지역사회에서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에게는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장인협, 최성재, 1987).

앞으로의 노인들은 은퇴와 함께 그 동안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보람 있게 계획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또 다른 삶을 영위 하려하고, 다가올 시간들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길 원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몸이 불편한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있어서의 봉사활동은 노인이 대접을 받으면서 건강도 유지 할 수 있으므로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김필레, 2000).

노인을 252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한다’가 117명으로 46.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다’는 135명으로 5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의 참여수준을 보면 매우 적극적이 35.9%, 대체로 적극적이 55.6 %로 나타나 결국 적극적 참여태도는 91.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 참여한 결과로서 얻게된 만족수준은 ‘매우 유익하였다’가 44명인 37.6%이고, ‘대체로 유익하였다’가 64명인 54.7%로서, 결국 92.3%가 ‘유익하였다’는 대답을 함으로써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김미라, 2002).

3)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생활 만족도로서 이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한국노년학, 2000).

즉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하여 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공적 노화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성공적 노화”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연속적인 자기평가의 결과이다.

노인은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젊은이를 지도·선도하고 공익사업에 유휴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상실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상받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복지주체로서의 노인과 노인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은 수혜 대상자에서 복지제공자로의 인식변화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 로서 만이 아닌 복지의 제공자로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중상층 노인들이 그들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나 특히 은퇴로 오는 역할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집단 중에서도 참여도가 높은 노인은 건강하며 생활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편 노인의 활동은 개인적 활동보다는 집단적 활동을 통해서 고독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 활동은 긍정적 자아상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회단체참여 활동은 개인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정체감과 자존심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즉 자신에게 알맞게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노후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첩경이 된다.

지금까지 주부 및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노인층의 참여가 확대되는 현상의 사회적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층의 증가, 노인의 여가시간 증대 및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 등과 함께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만족을 얻으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보고 되고 있다(김민정, 1998).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인 생활국면을 보완해주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가치감과 사회적인 능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와 안정감을 부여해준다.

한편 노인들은 은퇴와 함께 그 동안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보람 있게 계획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또 다른 삶을 영위 하려하고, 다가올 시간들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길 원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 및 노인기의 확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역할과 심리적 안정 및 육체적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이며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기회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노인자원봉사의 과제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최근 60대 노인이나 70대 초반의 노인 중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많고 이들 가운데는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초기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육체적, 정신적 쇠퇴로 인하여 의존적이며 비활동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특히 노인도 발달과정 속의 존재로 파악한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의 발달과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발달이론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 측면을 강조하는 이성록의 완성이론에 의하면, 성인기를 중심으로 이전의 단계를 미숙한 단계로, 이후의 단계를 쇠퇴의 단계로 보는 지배모델은 수정이 불가피 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자기 완성적 과업을 갖는다는 정상모델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성록, 2003).

2) 노인층의 인식전환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

하다. 즉 이것은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김동배, 1999),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경로를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류기형 외, 1999).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참여기회의 확대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육하는 교육훈련의 과정이며 동시에 복지사회의 주체로서 역량을 축적하는 국민교육의 최선의 기회이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지하여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교육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전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애체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성록, 2004).

한편 은퇴시민들의 사회참여의 기회로 자원봉사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은퇴시민들의 퇴직 후 생애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면 건강생활 등 노년기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시민들은 젊은 학생들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자가 될 수 있고, 후손에게 모범이 됨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쁨과 보람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루한 노년기가 아니라 활기찬 살맛나는 노년기로 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4)안전보호·인정보상제도의 도입

사기진작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식 및 친목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소그룹과정을 통한 자기성찰 및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과 보람의 생성, 계속교육훈련의 기회제공, 자원봉사자 및 리더에게 위촉장 발급, 회보·소식지발송, 전화 및 감사편지 보내기, 기관 직원들의 평소 친절한 응대, 자원봉사자 전용사무실마련, 개별상담과 격려·칭찬, 국내외 자원봉사 대상 기관의 견학의 기회제공,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신문 방송에 방영 및 기사화 하는 일, 표창장 및 격려·칭찬 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신바람을 생성케 하여 중단 없이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성록,2004).

또한 노인이 안심하고 보람을 가지며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않고 공익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와 보상을 통한 동기화가 필요하다(김미숙·김유경·김성희, 1998).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확립하고 개별적이고 융통성이 있게 제도를 운영하여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노인자원봉사는 노인들이 지닌 자원들을 가지고 지역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도움의 제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인자원봉사는 봉사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교육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봉사자와 피 봉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도움 자체 외에 그이상의 상호 작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긍정적·규칙적인 생활태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노후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잠재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노인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1998),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김미라(200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서울여대 사 회복지대학원 노인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미혜(1997),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의 모형개발”, 한국노년학 제13권 2호.

이성록(1998), 「제4의 물결 자원봉사활동」, 학문사

이성록(2003), 「자원봉사 매니지먼트」, 지식과 경영


이성록(2003), 고령사회와 자원봉사활동, 전국자원봉사지도자대회자료집, 대구광역시.

이성록(2004),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비전, “자원봉사진흥법안 공청회 자료집”, 자원봉사 활성화추진기획단.

장인협·최성재(2001),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현외성외(2000),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예풍출판사.



부록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 배양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협동적 참여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 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적, 비정파적, 비종교적이 되도록 한다.
4.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한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여성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8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년을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를 행하는 자원봉사단체·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세감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 출연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 관련 정책 정부 건의
5. 자원봉사정보 연계 및 지원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국가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제외한다.

제17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기존에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되 제14조 규정에 의해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설립·지원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이 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275-20-085456 / 제일은행 예금주 :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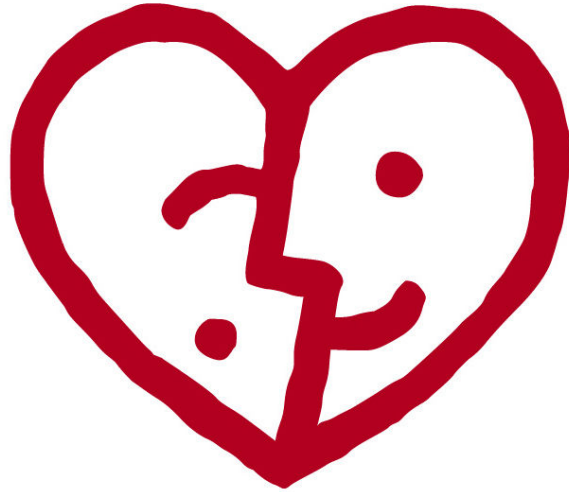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 절 취 선

포럼 (회원) 입회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4. 신청인 (서명)					



제41회 정기포럼 자료집
자원봉사진흥법 제정과 향후과제

발행일 : 2004. 7.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kovofo@hanmail.net
